

주주 귀하

제 20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정관 제 17 조에 의거 제 20 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0 년 3 월 27 일 (금) 오전 9 시 30 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 6 층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제 20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별첨 1. 정관변경 신규대조표 참조)
제 3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본점에 비치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신분증
- 간접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2020 년 3 월 12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주식회사 에빅스젠

대표이사 유 지 창

관 인
생 략

별첨 1) 정관변경 신규대조표

개정 전	개정안
제 1 장 총 칙	
<p>제 2 조(목적)</p> <p>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개발 및 제공업 2. 유전자 치료생리활성물질 개발 및 제공업 3. 항바이러스제 개발 및 제공업 4. 생물학적 제제 개발 및 제공업 5.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상품화, 판매업 6.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 개발 및 상품화, 판매업 7. 위 연구개발에 따른 국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이전 8. 신약특허 기술이전 및 이에 따른 로열티 획득 사업 9. 신약개발사업 10. 신약개발을 위한 약효검색, 발굴 및 분석 서비스업 11. 연구개발 용역업 12. 진단제 개발 및 제공업 13. 홈페이지 제작, 서버판매 및 서버관리업 14. 의약품/의료용구 도소매업 15. 의약품/의료용구 수출입업 16. 통신판매업 17.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 	<p>제 2 조(목적)</p> <p>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약 연구, 개발 및 상품화, 판매업 2.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 개발 및 상품화, 판매업 3. 개발된 제품 및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 4. 신약개발을 위한 약효검색, 발굴 및 분석 서비스업 5. 연구개발 용역업 6. 진단제 개발 및 제공업 7.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8. 기타 의료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9. 과학기자재, 시약의 제조 및 도소매업 10.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1.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2. 화장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3. 위 각호의 컨설팅업 14. 의약품/의료용구 도소매업 15. 의약품/의료용구 수출입업 16. 통신판매업 17.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8. 수입품의 판매업 및 위탁업 19.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관리업 20. 위 각호에 연관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2 장 주 식	
<p>제 9 조(주권의 종류)</p> <p>회사의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및 10,000 주권의 8 종류로 한다.</p>	<p>제 9 조(주권의 종류)</p> <p>회사의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및 10,000 주권의 8 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예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p>
<p>(신설)</p>	<p>제 10 조의 5 (주식의 소각)</p> <p>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p> <p>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p>	<p>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p> <p>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p>

<p>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제 12 조(주주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③ 제 1 항의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제 12 조(주주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③ 제 1 항의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에서 제 3 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p>
<p>(신설)</p>	<p>제 12 조의 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p>
<p>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 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단 이를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 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단 이를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3 장 사 체</p>	
<p>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경영상필요로 외국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 억원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경영상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p>

<p>4. 급박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경우 4. 급박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할 수 있다.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급박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월(공모 이외의 경우에는 1 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이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2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할 수 있다.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급박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월(공모 이외의 경우에는 1 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이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 16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 16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 12 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p>
<p>제 5 장 이사 및 이사회</p>	
<p>제 31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제 31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제 34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도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p>	<p>제 34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 6 장 감 사</p>	
<p>제 41 조(감사의 수) 이 회사의 감사는 1 명이상으로 한다.</p>	<p>제 41 조(감사의 수) 이 회사의 감사는 1 인 이상 2 인 이내로 한다.</p>
<p>제 7 장 회 계</p>	
<p>제 50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제 50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주주총회 위임장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과의 관계 :

본인은 주식회사 에빅스젠의 주주로서 제 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모든 권리를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의결권 있는 주식수: 주

2. 위임사항 :

1) 보유한株式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결 권리

2) 주권 및 배당금 등 수령에 관한 모든 사항

20 년 월 일

위임인

주주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주식회사 에빅스젠 귀중